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김 재 삼*

목 차

- I. 서 론
- II. 실효성 있는 동원제도의 발전
- III. 미래지향적 예비전력 관리체계 정비
- IV. 신뢰받는 예비군훈련 정착
- V. 결 론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前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있었다. 2회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남·북간에 지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은 물론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육군본부 동원전력실 차장

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게 비해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정, 기계화부대와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과 예비전력면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해킹 전담부대운용 등 사이버전에 대한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며 특히 핵 능력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으면서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한편 끊임없는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여 여전히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과 한반도 적화통일 추구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다.¹⁾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급성장과 러시아의 부흥,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구 등으로 인해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과 영토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잠재적 위협과 긴장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²⁾ 미국은 9·11테러 이후 전통적인 국가안보개념에서 탈피하여 테러나 국가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신속대응군 전략개념을 설정하였고 이 전략개념에 입각하여 전투력을 세계로 투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주요국가들은 네트워크 중심전(NCW : Network Centric Warfare), 사이버전, 효과기반작전(EBO : Effects Based Operation) 등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수립과 전쟁 수행가능한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등 급속도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³⁾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1)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p.15-17.

2) 앞의 책. pp.3-14.

3) 공군본부, 외국 군구조 편람, 2007. pp.64-77.

미 육군은 모듈화 편제 개편을 가속화하여 2010년까지 총70개 여단전투단 위주로 투입-대기-훈련의 3교대 순환개념으로 재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주둔 미군은 재배치를 통해 소요장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국방개혁 2020」을 제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기본법⁴⁾을 제정하였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편하여 저비용·고효율의 경제적인 군 운영체계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육군은 「국방개혁 2020」추진과 연계하여 「지상전 개념⁵⁾」을 설정하고, 병력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면서 전투력은 더욱 강화된 기술위주의 첨단 정보과학군을 건설하고자 한다. 지휘구조는 신속한 지휘결심과 효율적인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군단사령부를 폐지하고 단위부대는 항상 전투가 가능하도록 완전한 편성을 추구한다. 상비군과 예비군은 규모를 축소하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상비군은 부대증편 없이 완전편성으로 전방에 배치하고, 예비군은 조직을 보강하고 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즉각 전투력 발휘가 가능토록 상비군 수준의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육군은 304만명의 예비군을 관리하면서 전시 부대확장소요를 충족하고 후방지역작전의 주요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방개혁2020」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20년까지 150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비군을 명실상부한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서 육성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군관리 및 훈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원관련 법령체계와 제도의 미비, 자원관리 위주의 예비군 조직편성, 예비군 훈련방법 및 열악한 여건 등으로 인해 전력발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안보환경변화와 국방개혁추진에 부응한 강한 예비전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력화노력에 집중적

4) 국방개혁 기본법(2006.12.1 제정)은 국방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국방인력운용 구조 발전, 군구조 개편과 전력체계의 균형발전, 병영문화 개선 및 발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5) 지상전 개념은 첨단화된 감시 - 결심 - 타격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가용 전투력을 동시·통합 운용함으로써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네트워크기반 동시·통합전」으로 합동작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의 대체전력으로
서 전력화하기에는 많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는 예비전력이 국가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도 예비전력 예산의 반영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전력강화에 제한을 받
고 있다. 예산면을 살펴보면 「국방개혁 2020」 총소요예산 621조원(전
력투자비 272조원, 경상운영비 394조원) 중, 예비전력예산은 6.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여 향후 국가안보에 있어 예비전력의 역
할증대에 부합하기 위한 노후된 장비와 물자의 개선이나 열악한 훈련
장 및 시설의 현대화 등 실질적인 국가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⁶⁾

현재 동원과 관련된 법은 평시법과 전시법으로 구분되어 있어 평시
자원의 준비는 가능하나 동원령 선포 후 전시 자원의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정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총동원제도를 적용하
다보니 동원령 선포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
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연차를 기준으로 하는 예비군 복무와 훈련체계는 상호 연계성
이 미흡하여 자원 및 훈련관리가 복잡하고, 복무 및 훈련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복무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군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및 육성지원 면에서도 군과 지방자치단체간 책임범
위와 한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차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예비군복무와 예비군 훈련체계는 복잡하
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임무와 훈련이 미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
어 시간이수제 개념에 따라 실전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
고 있다. 예비군 훈련장은 대대단위로 전국지역에 분산되어 관리소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반면 예산은 집중투자가 어려워 시설 및 장비가

6) 한국국방연구원, '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pp.31-34.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전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방개혁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미래 지향적 예비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국민과 함께하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전·평시 동원 관련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 기본법 등의 평시법과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 긴급명령 등의 전시법을 확인하여, 이원화된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동원집행을 위해 주특기 충족율을 향상 방안과 전국단위의 호송체계 발전방안,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동원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 및 몰자동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동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3장에서는 연차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예비군 복무체계와 훈련체계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미래의 예비군 운용 개념과 복무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예비군 부대의 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향토사단 개편 후 『시·군·구』 단위의 향방대대 편성과 지역예비군을 지원하는 체계 등 향방작전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예비군들의 자율적 참여율을 향상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및 일반시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들의 불편해소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방안과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훈련센터 설치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예비군훈련 발전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실효성 있는 동원제도의 발전

1. 현상 분석

동원의 의의는 '국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쟁이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잠재적 군사력을 전력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 국가의 동원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따라서 국가 동원은 신중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난제이며 동시에 생존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선택이기도 하다.

국가동원에 관련된 법은 평시법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시법인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과 긴급명령, 그리고 전·평시법인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전·평시법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예비군운동과 병력동원분야는 위기상황에 유효적절한 대비가 가능하나, 전시 또는 평시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력 및 물자동원은 대비가 제한된다. 현재도는 작전상황에 따라 동원지역과 자원의 부분적인 동원이 불가능하여 동원집행의 융통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 적 특작부대 활동이 전개되어 사회혼란이 가중되면 교통혼잡과 동원병력 수송의 차질이 예상된다. 전쟁초기 발생될 교통대란 및 수송 제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원병력수송은 호송단 책임하에 동원병력을 호송하도록 함으로써 동원 실효성을 증대시켰으나 개별 동원 대상자들에 대한 수송대책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⁸⁾

7)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2002, p.277.

8) 현행 호송단은 6개의 호송대, 1개 호송대는 4개의 호송중대(8개 호송반)로 구성된다. 호송단은 수도권에서 1·3군 지역에 배정된 동원병력의 호송책임을 담당하

현재의 병력동원제도는 소집부대중심, 계획 위주로 되어 있어 전시 수도권 공황 사태나 교통 혼란시 동원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집행조직마저도 미약하여 소수의 병무조직으로 실제 병력동원을 집행하기에는 제한이 많을 것이다.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 상황실로 구성되고, 종합상황실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지원반 등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종합상황실내에 동원 업무를 협조 및 통제하는 조직이 없어 동원협조 기능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자동원 자원관리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국가동원 자원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파악하고 있으나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가동원 자원조사”는 모든 동원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은 30%정도만 실시하고 있어 업체의 도산,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물자동원집행은 군·행정관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와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며, 동원물자의 인도·인수를 위한 군과 행정관서의 실무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동원관련 법령 정비

1) 다양한 동원관련 법령을 통합한 「동원기본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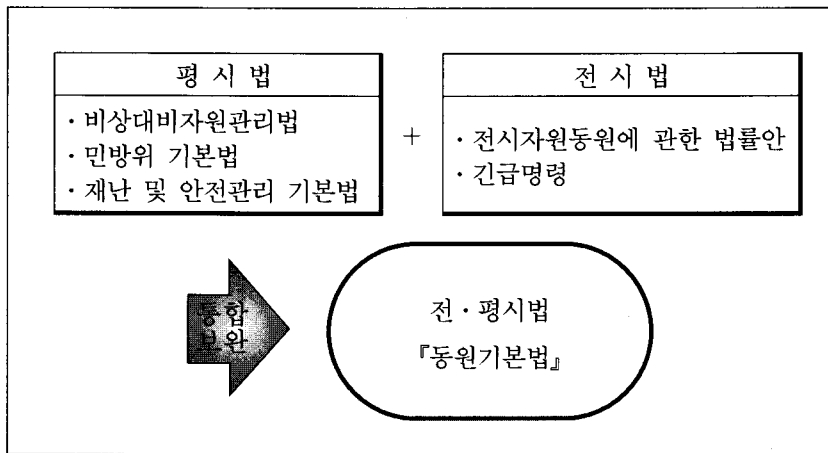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1971년에 제정되었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1984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는 평시 준비법이다. 이는 전시나 사변을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 전시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사전에 조사

나 평시 편성인원이 부족하여 실제 호송단 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하며, 자원을 비축하도록 하는 법이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해 각 부처별 시행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평시에 국한된 법령으로 전시 소요자원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자원의 준비를 위해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시 집행을 위해서는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이나 긴급명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원화된 법체계는 위기상황에 적절한 조치시기를 상실하게 되며, 인력 및 물자동원에 많은 제한을 주어 보완이 요구된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안전보장회의는 평시법(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민방위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전시법(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명령)을 통합하여 <그림 2-1>과 같이 전·평시에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법령체계[동원기본법(가칭)]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양 체제의 이원화 법률을 일반법을 성격의 「동원기본법」으로 단일화시킴으로써 계획과 집행기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림 2-1> 동원기본법 제정

2) 동원의 단계화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 보위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⁹⁾ 적의 전쟁도발 징후가 고조되어 동원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총무 2중사태가 발령된 후 전시 대기법안이 입법 제정되어야만 한다. 특히, 일부특정지역에 국한된 사태발생시 부분적 동원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나 현재는 총동원령선포를 위한 입법과정과 국회의 승인을 득해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¹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 위협의 급박한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표 2-1>과 같은 부분동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부분동원은 적 공격전 위기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자원 종류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총동원을 하기 전에 필요한 지역과 물자에 국한하여 일부만을 동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다.

부분동원제도의 시행은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국민경제 및 국민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동원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에만 선포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시 신속한 동원령 선포가 제한된다.

10) 이성록, “한국의 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 국방대 석사학위논문. pp.39-40.

외국의 경우 위협상황에 따라 선별동원, 작전소집, 부분동원, 완편동원, 총동원 등 신속적인 동원제도를 운용하고, 특히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20만명의 선발예비군을 270일 범위 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QDR 2006에 의하면, 미국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예비군 소집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65일로 늘리고자 한다.

<표 2-1> 부분동원제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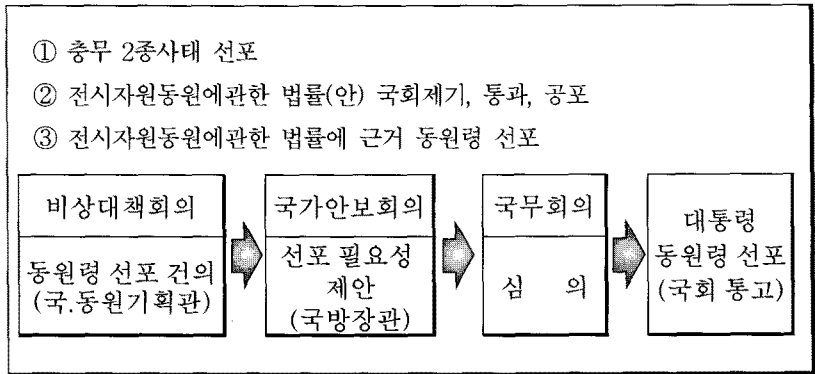
구 분	제1단계 부분동원	제2단계 총동원
소집시기	D-Ⅲ/충무 3종사태시 (적공격 징후 포착시 또는 일부 지역 작전시)	D-Ⅱ/충무 2종사태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소집범위	사태조치를 위해 전투력 발휘가 긴요한 부대의 병력, 물자	전 동원자원
절 차	국방부장관 제안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전시와 국가비상사태시에는 총동원을 시행하되, 최초 공격징후를 포착하였거나 일부 특정지역의 한정된 작전시에는 최소한의 병력과 물자에 대해 부분동원을 시행하여 동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동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¹¹⁾ "전시 국가지도지침(대통령 훈령 제117호)"에 부분동원제도의 반영이 요구된다.

3) 동원령 선포요건 및 절차 보완

동원령을 선포할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그림 2-2>와 같이 까다로운 동원령 선포요건과 절차로 인해 적절한 선포시기를 상실하여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11)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 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며, 위원은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위촉위원이며, 합참의장이 배석한다.



<그림 2-2> 동원령 선포절차

따라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안전보장회의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동원령 선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시’만 선포하던 것을 탄력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공격 징후 포착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라고 선포요건을 구분 및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가 고조되어 총무 2중사태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위기발생 초기단계에 초동진화를 통해 국가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집행위주 병력동원제도 발전

1) 정예자원 활용을 위한 동원지정제도 발전

’07년 전국의 증·창설부대 주특기 충족율은 71%로써 충분한 가용자원을 고려시 극히 저조하다. 향후 1~2년차로 지정을 축소할 경우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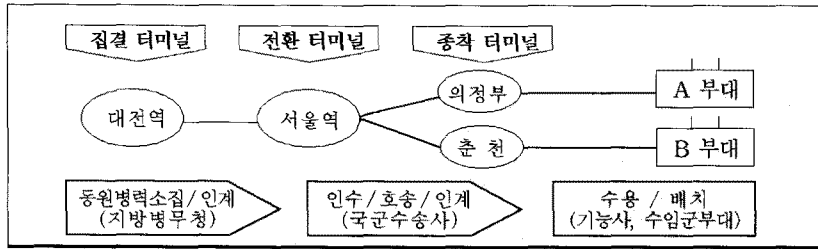
율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족을 향상을 위해 지정대상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과 대학생예비군 지정방법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국단위 동원지정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개별수송체제로 전환하여 동원용소를 보장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군 훈련 방침보류에서 대학생을 해제하여 일반예비군과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의 대학단위 동원지정에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지정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방학기간 중에도 적시적인 동원을 보장할 수 있다.

기술인력은 전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소요가 적게 제기하였다. 과학화 기술인력 소요를 증가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자격면허자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규자격이나 면허취득자는 추가 지정하여 전시 군 첨단무기운용에 정예자원을 활용한다.

2) 전국단위 동원병력 호송체계 발전

전국단위의 개별동원병력은 간부, 특전사, 정보부대, 유도탄 부대 등에서 핵심임무를 수행하므로 개전초 중·창설 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개별동원병력의 적시 수송은 전시부대 확장과 초기 전투력 발휘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터미널식 수송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터미널식 수송체계는 집결터미널에서 중간 전환터미널을 경유 종착지까지 철도나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그림 2-3>과 같이 전국단위 동원병력은 “터미널식 수송체계”를 활용하여 주요 간선역에 전환 터미널을 설치하고, 수임군 부대, 병무청, 국군수송사가 협조하여 개별동원병력을 집결·수송하는 체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¹²⁾

12) “터미널식 수송체계”에 의한 원활한 동원병력수송을 위해서는 동원병력이 집결 터미널까지 대중교통수단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 동원소집통지서 개선과, 터미널 별로 인계/인수 전환 및 우발상황 조치를 할 수 있는 병무청, 국수사, 수임군부



<그림 2-3> 터미널식 수송체계(안)

특히, 병무청은 전방군단지역의 동원병력 수송대책을 축선별로 강구 하되 경계와 수송수단에 대해 군단과 협조한다. 전시 호송단은 수도권 및 후방지역에서 동원되는 증·창설부대 동원병력, 손실보충요원의 호송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이며, 조직편성상 평시 증대장이 미편성되어 증 편임무수행이 제한되므로 호송대별 증대장을 편성하고 병력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수도권 공황발생시 동원보장대책 강구

수방사와 전방 1·3군 주요부대는 수도권의 동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초기에 예상되는 수도권 주민의 공황과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심각한 동원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이로 인한 수도권 부대의 증편 지연, 동원사단의 증편과 전방전개 및 장애물 설치제한 등에 대비한 초전전투 수행방법과 작계 시행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¹³⁾

대의 협조체제가 강구되어야 하며, 중착 터미널에서 소집부대까지 수송을 위한 차량의 준비와 수송책임이 명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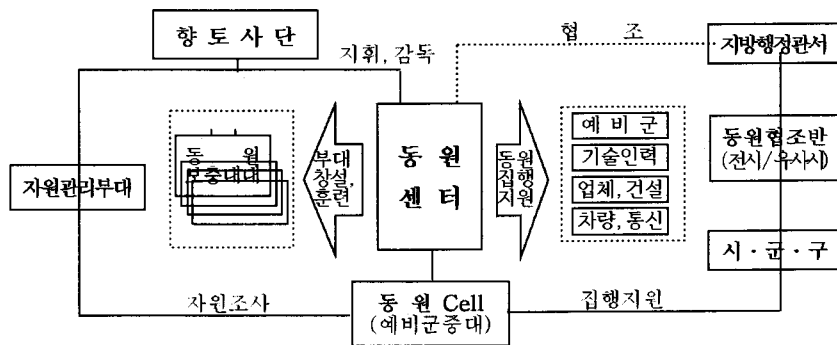
13) 작전계획은 “동원은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다.”라는 가정의 완전성에서 “동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불완전성으로 수정하여 동원제한시 초전 전투수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동원제도는 부분동원제도 도입과 시행, 동원을 산정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수도권 동원소집계획 개선 등이 요구된다. 특히 동원령 선포이전에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거 수도권 지역 동원을 분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지역 내에 위치한 동원병력 집결지를 외곽지역으로 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전쟁연습, 작계훈련시 동원 제한사항을 고려한 실질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체제가 정착되어야 하며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합동 긴급동원훈련 등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4) 동원센터 편성/운영

병무청의 행정관서 병무조직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시행이후 비상대비 조직의 대폭감소는 동원업무 발전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고, 향토사단 구조가 개편되면 동원보장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행정관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시 조직적인 동원준비와 전시 적절한 동원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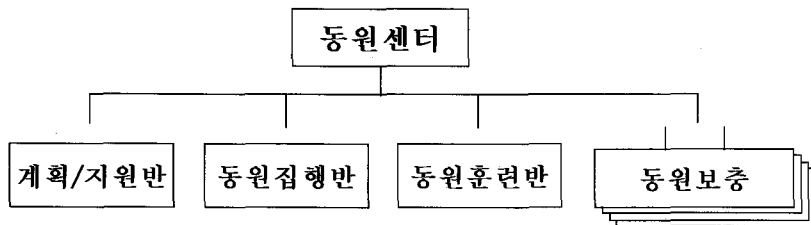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육군본부, 2007 육군 정책보고서, p.85.

<그림 2-4> 동원센터 개념도

2007년 육군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효율적 동원집행을 위해 동원센터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동원센터란 전·평시 동원자원관리 및 동원집행 보장을 위한 통합·조정기구이다. 원활한 동원센터 운영을 위해 <그림 2-4>와 같이 1단계로 향토사단 중심의 동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2단계는 국가 차원의 동원체제로 전환하여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심의 중앙동원센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향토사단 예하의 지역동원센터는 지방 행정관서와 긴밀한 협조로 사단책임지역 내의 제반동원자원을 통합관리하고 국방정보체계와 병무청 전산망을 연동하여 동원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동원센터는 <그림 2-5>와 같이 계획/지원반, 동원집행반, 동원훈련반, 동원보충부대 등으로 편성하고, 근무요원은 예비역 우수간부를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하되 센터장은 현역(대령)을 고려한다. 비상기획위원회 중심의 중앙동원센터로 확대시는 행정관서와 병무청 담당관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그림 2-5> 동원센터 편성(안)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중앙동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원주무부처와 국방부의 동원기능을 통합하여 평시 비상대비계획, 자원관리, 비상대비훈련을 일원화하여 수행하고 전시 군·관·민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원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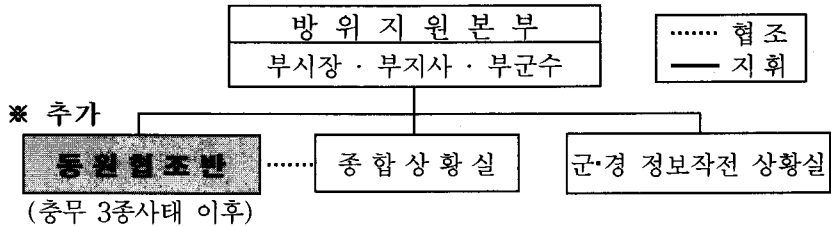
5) 「동원 Cell」 제도 시행

동원센터의 자원관리 및 동원집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예비군 중대 조직을 활용한 동원Cell을 운용하며, 이는 '07년초 국방동원자원 조사간 시험 적용한 예가 있고, '0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동원 Cell은 책임지역내의 동원자원관리 및 집행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동원업무수행의 핵심 기초단위이며, 평시 예비군 중대장에 의해 운용되나, 전시에는 동원부중대장이 Cell장이 되면서 동원지원 소대 또는 분대를 활용한 응소 독려, 긴급동원 소집 및 기피자 색출지원, 물자 긴급동원과 징발을 위한 각종 임무를 수행한다.

6)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동원협조기능 강화

기존의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군·경요원은 정보 및 작전위주로 편성 및 운용되므로 전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동원은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안)

<그림 2-6>에서 보듯이 방위지원본부 내에 동원협조반을 설치하여 군·관 합동 동원상황평가를 하고, 행정관서, 병무청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동원집행과 전시 긴급동원소요요청 및 처리를 한다.

4. 물자동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우수한 민수용품과, IT산업에 의해 급속히 발전한 정보·서비스용역 업체는 높은 신뢰도와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물자동원 활용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물자동원에 있어서는 산업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동원자원 신규발굴은 고사하고 지정된 동원자원의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자원조사시마다 다수 부적격업체의 발견, 대체지정 미조치 등 부실한 자원관리가 반복되고 있으며, 동원업체의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도 일부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동원 Cell을 활용한 자원관리 및 동원집행 지원

예비군중대를 동원 Cell로 활용하여 동원집행시 지원한다면 상당히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비군 중대장은 적시에 정확한 자원과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군 부대 및 행정관서 실무자의 능력 위축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2010년 이후 국방동원정보체계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동원 Cell에서 정보공유/종합분석이 가능하므로 더욱 효율적 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예비군 중대장은 동원집행 지원소대(동원부중대장 통제)를 활용하여 물자동원 집행시에 상황전파, 응소독려 등 업무를 지원하고, 동원집행 차질시 협조·조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2) 물자동원 훈련방법 개선

충무훈련은 국민편익 제공과 훈련효과 달성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도록 현재의 형식적인 훈련을 실전적 훈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훈

련에 불참한 사람에게 벌칙보다는 보충훈련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제로 국민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동원 생산훈련은 전쟁연습상황과 연동이 되는 실전적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수임군 부대가 중심이 되어 전장실상이 반영되도록 세밀한 훈련준비 및 통제를 하고, 현재 소량의 장구류 위주에서 초기단계 임무 고지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불시생산훈련 대상 업체수도 증가 시켜야 할 것이다.

통제운영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동원준비태세 평가를 매년 국방동원 자원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동원업체 지원 및 제재방안도 실효성을 갖도록 법규 및 방침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충무훈련간 연습상황과 연계한 불시 훈련 실시 등 업체의 전시 능력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훈련 모델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민간자원의 동원분야 활용

군 기술특기 중에서, 무선통신기사, 중기운전기능사 등은 평시 운용을 최소화하고 동원자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표준화하고 전역 후에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와 기술직종 근무자는 해당특기로 분류하여 동원지정을 하면 민·군간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저비용·고효율의 경제적인 동원을 위해서는 사회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고품질의 상용품을 물자동원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 수품 동원차질시 대체용으로 민수용품이 동원될 계획이며, 이는 품목별로 공급업체 및 단계별 공급량, 인도/인수장소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동원실효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 군사용으로만 사용되던 첨단기술이 민간기술에도 이전되어 군용품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상용품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 작전/대테러전 등과 같은 미래의 다양한 전투상황에 필요한 소량·다품목 물자는 소요대비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민간상용품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상적인 산업동원의 차질시 대체할 민수용품 동원은 생산을 위한 시간이 제한될 것이므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산된 유통물량을 즉시 긴급 동원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많은 물품을 개별적으로 인수하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가 모든 품목을 종합 공급하는 <그림 2-7> 주공급자(Prime Vendor) 개념의 동원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공급자(Prime Vendor) 제도

- ① 사용자가 직접 업체에 청구하고, 업체가 직접 사용자에게 직납하는
 군수체계로써,
- ② 조달기관은 각종 군소요 물품을 종합 공급하는 단일 공급업자와 계약
- ③ 미군의 경우 냉전 종식후 주공급자(Prime Vendor) 제도 도입¹⁴⁾
 ☞ 작고 효율성 높은 군수지원체제 구축

<그림 2-7> 주공급자 제도

산업발전에 따른 신기술 분야중 동원활용을 할 수 있는 정보·용역 서비스는 대표적 사례로 물류 및 경비업체를 들 수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민간시장의 물자유통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구조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물류만을 전담하는 전문업체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경비업체도 상당한 수준의 지휘통신 및 추적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다.

동원 가능한 민간자원은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공급량도 군의 수요

14) 소요되는 물품을 단일 공급업자가 주로 공급한다 하여 주공급자(Prime Vendor)라 칭한다.

를 충족할 수 있다. 특히 발달된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동원을 활성화하려면 과거의 산업, 수송, 건설, 통신 등의 물자동원 업무영역에서 서비스 용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Ⅲ. 미래지향적 예비전력 관리체계 정비

1. 현상 분석

우리 국민들은 예비군이 의무복무가 아니고, 마치 현역만 복무의무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비군은 편성대상자 모두가 동등한 편성과 훈련을 하여야 하나, 동원 및 훈련제외 또는 보류자가 약16만여 명(전체대상의 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다수 보류자의 존재는 국민들로 하여금 예비군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예비군 복무는 기본적으로 연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연차에 따른 동원 및 향방예비군의 신분구분, 동원지정자와 미지정자 동원지정 관계가 혼재되어 훈련시간 부과 및 자원관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시 임무에 부합한 훈련과 민방위제도의 연계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예비군들을 관리하는 군무원은 별정직 군무원으로서 군무원인사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단일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게 됨으로써 동기유발과 복무활성화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군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적정 예비군 규모를 판단하고, 복무년차와 임무 등 복무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예비군은 편성인원이나 작전소요보다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현역 관리대대(시·군·구) 예하에 읍·면·동대를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90

년대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읍·면·동 행정조직의 축소와 도·농간 심한 인구격차 및 광역 생활권으로 인해 예비군 조직 및 운영의 기본단위를 현재의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 무기 및 장비 수준은 향방예비군 작전소요('07년 합참판단) 대비 무기는 80~90%, 장비 및 물자는 30~50% 수준이며, 장비 및 물자 대부분은 현역부대에서 전환된 구형장비로 노후화되어 있다. 이들 노후된 장비 및 물자는 평시에는 훈련과 정비유지가 곤란하고, 유사시 초기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어 향토방위작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법규와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무기·장비 현대화와 훈련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¹⁵⁾

예비군부대는 국방예산과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의하여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지만 '06년 실제 경비를 분석한 결과 소요의 70%이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복지사업도 현역중심으로 추진되어 예비군부대에 대한 조직활성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예비군 복무체계 발전

1) 예비군 복무에 대한 국민 복무의식 제고

(병역의무 = 현역 + 예비역)

예비군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비군복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병역 = 현역 + 예비역**이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8조 1항에 의해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현역군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하지만, 간부 예비군의 복무

15) 김성규, "군사력건설과 군구조개편분야", 「한국군사」 제24호, 2007, p.21.

연령을 <표 3-1>과 같이 상향조정하면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복무를 지속하게 하여 전력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

<표 3-1> 예비군 복무연령 조정(안)

구 분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하사
현역정년	63	61	59	58	56~40
예비군 복무(안)	66	64	62	61	61~45(현역 정년+5세)
비 고	병의 경우 전시 예비군 편성(40세 + 5년) 고려, 간부 예비군복무연령 조정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1항 10 : 평시 40세인 “병”의 병역의무기간 45세까지 연장

2) 미래 예비군 운용개념 정립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점을 감안하여 미래 예비군은 전역 년차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예비군은 <표 3-2>와 같이 동원예비군은 2년차 이내 자원으로 증·창설부대의 동원지정과 손실보충요원으로 운용하며, 향방예비군은 3~5년차로 예비군부대의 향토방위작전요원으로 운용하도록 편성/관리하고, 6~8년차는 예비자원으로 예비군편성에서 제외하되 추가로 향방동원이 가능토록 비상소집체제를 유지한다. 간부예비군은 현역정년 연령까지 예비군으로 편성하되 전역차수와 병과 등을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전시는 현역정년에 추가하여 예비군복무 연령을 부과하도록 한다.

<표 3-2> 미래 예비군운용 개념

구 분	동원예비군	향방예비군	예 비 자 원
연 차	1~2년차	3~5년차	6~8년차
임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 증·창설 •손실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방위작전 •지역안정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군편성 제외 •추가 동원 준비 •비상소집체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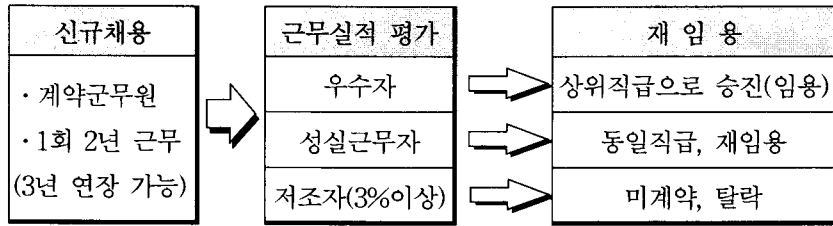
3) 예비역간부 복무제도 발전

국방개혁 취지에 부합된 미래형 예비전력 간부운용체계를 발전시켜 현재 운용중인 예비군관리 군무원제도를 별정군무원에서 계약군무원 체제로 개선하여 향방대대(예하 향방중대 포함), 동원센터, 훈련센터, 동원보충대대의 주요직위 소요인력을 예비역간부로 활용하여 상근 복무토록 한다. 예비역간부는 <표 3-3>과 같이 다단계 직급 복무(안)을 강구하여 다양한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복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표 3-3> 예비역간부 직급별 복무(안)

5급 / 7급	개선	직 급	4급 ~ 7급	
예비군중대장 (90%)		향방대대	대대장 / 중대장 / 참모	
행정 담당 (10%)		동원센터	참 모	담당관 / 행정관
		훈련센터		교관 / 관리관
		동원보충대대		참 모
		비 율 (%)	4급5~10%, 5급40~50%, 6급20~30%, 7급10~20%	

또한 <그림 3-1>의 5년 단위 재임용제도 도입과 신규채용을 병행하여 예비군조직을 활성화한다.



<그림 3-1> 5년 단위 재임용제도

기본근무는 2년 계약 후 1년씩 3회 연장 가능하며, 직급별 4급(58세), 5급 이하(55세) 상한 연령을 적용한다. 1회 최대 5년 복무 후 재임용하거나 상위직급 임용이 가능하다. 보직은 향방대대와 동원 / 훈련센터 / 동원보충대대 상호 교류하되, 최소 1년 이상 동원 / 훈련센터 및 동원보충대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원보충대대는 예비군간부를 선발하여 우선 지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소집근무 후 일당으로 보상하고 소령~대위 전역자 중 희망자를 우선 선발 지정하고 부족직위는 중위~부사관을 지정한다.

3. 예비군 부대 편성 보강

도시인구 집중과 교통수단 및 도로의 발달은 지역예비군의 편성기준인 행정구역을 많이 변화시켰다. 지역예비군은 직장예비군과 달리 지역내 편성인원이나 작전소요 보다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현역 관리대대(시·군·구) 이하에 읍·면·동대를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 행정조직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주민생활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자원관리 및 작전수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 조직 및 운영의 기본단위를 현재의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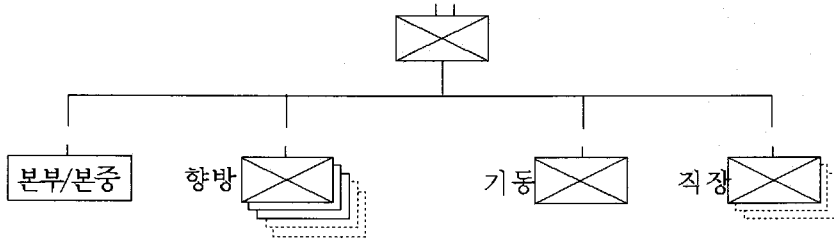
직장예비군부대도 IMF 이후 직장근로자의 고령화와 생산시설 자동화 등에 의한 인원감축 등으로 체대 격하 및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발달에 따라 기존의 공단지역이 집중화되고 인원중심의 생산활동에서 자동화되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회사의 분사(分社) 등으로 자원관리 및 작전운용/예비군훈련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여성 예비군부대도 편성/운용개념 발전없이 각 지역별로 지자체와 협의 하에 불규칙하게 창설되고 있어 전·평시 운용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1)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발전

육군은 향토예비군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예비군중대 편성을 정비함으로써 자원관리를 단순화하고, 향토사단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현재 예비군 관리대대를 대체 할 수 있는 순수예비군부대인 향방대대를 <그림 3-2>와 같이 『시·군·구』 단위로 편성/운용하는 중이다. 아울러 향방대대는 재해·재난통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지역 안정 작전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1단계는 향토사단 개편 전에 향방대대 창설을 위한 지역대 편성 및 운용이다. 지역예비군중대는 자원규모, 작전지역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대 편성/운용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예비군부대에 대한 지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간의 중간지휘조직인 『시·군·구』 단위 예비군 지역대를 운영하고 지역예비군중대 통·폐합시 최소 단위인 분대를 편성한다.

2단계는 향토사단 개편 후에 『시·군·구』 단위로 향방대대를 편성 및 운용한다. 『읍·면·동』 기준의 지역중대 위주 편성에서, 작전운용개념 및 지역별 예비군 자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며 임무는 향토방위작전과 예비군중대를 지휘/통제하고, 향방작계훈련을 시행하고, 부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사보좌역을 담당하는 임무부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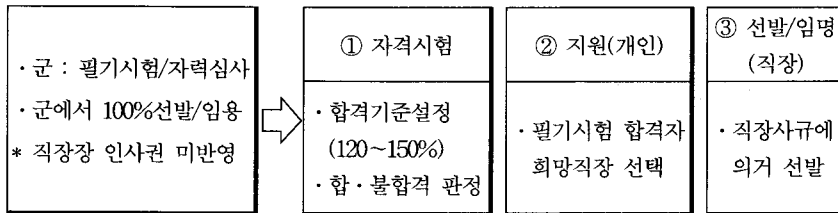


<그림 3-2> 항방대대 편성(안)

2) 직장 예비군부대 편성 발전

직장예비군부대는 현체제를 유지하되, 국가기관 예비군부대는 『시·군·구』 단위로 소대급 이하부대를 중대장이 통합하여 통제하며 국가중요시설 및 방산업체 중 분대급 이상 자원 보유직장은 의무적으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는 등 운용을 강화하고, <그림 3-3>과 같이 직장예비군지휘관 선발방법을 개선한다.

국가중요시설 예비군부대는 지원예비군 및 추가편성자로 시설방호를 강화한다.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시 직장장의 인사권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군에서 자격시험 / 자격기준을 제시한다.



<그림 3-3> 직장예비군 선발

3) 여성 예비군 편성 및 운용 발전

여군도 퇴역이나 전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인사법의 개정 추진에 따라 여군인력에 대한 예비전력전담조직 가용직위를 고려하여 선발 활용함으로써 전역하는 여군의 취업직위를 확대하고 여군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여성인력 활용 확대에 따라 여성 예비군 편성 및 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별 향토방위작전시 전투근무지원요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성 예비군소대를 『시·군·구』 단위의 전시운용에 적합하도록 기동중대 예하에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향방작전 지원체계 강화

예비군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는 CAR소총과 M16, M79 / M203 유탄발사기 등 개인화기, LMG30 기관총, 60mm 와 81mm 구형박격포 등 공용화기, P-77과 P-85K/핸드토키 등 통신장비, 구형 나침의 및 쌍안경, 구형 개인장구류 등 1970년대까지 사용하던 것이며, 보유량의 수준은 무기 80~90%, 장비 및 물자 30~50% 수준으로, 대부분 구형장비로 노후되었고 보유수준도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예비군 무지 및 장비를 교체하고 확보수준이 저조한 전투긴요장비의 조기 확보를 통해 향방작전지원태세를 향상하고, 탄약 및 정비지원과 훈련의 연계로 전투력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1) 향방예비군 장비 및 물자 현대화

예비전력의 발전은 편성, 훈련관리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방 전

투물자는 무기, 전투장구류 확보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유사시 초기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비군 무기는 현역무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신형무기를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구형 CAR소총, LMG30, M79, 57mm 등은 과거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편제표에 급급하기보다는 주기적인 기술검사와 성능시험을 통해 과감한 도태와 폐처리를 하고 차세대 무기체계 및 현역 전력화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100% 교체하여야 한다.

육군은 1단계로 2012년까지 방독면, 방탄헬멧, 수통 등 개인장구류 7종에 대해 50%를 확보하고, 2단계로 2020년까지 전품목100%를 확보할 계획이다.

2) 예비군 육성·지원체계 정립

국방개혁2020 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정예 예비군 육성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대 요구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액은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¹⁶⁾ 향방예비군의 부족물자는 작전운동과 예산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방독면, 방탄헬멧, 개인천막 등은 군예산으로 조기에 획득하고 기타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과 통합방위법의 예비군 육성·지원과 향방작전 지원이 전·평시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통합방위협의회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1998년 행자부 지침의 육성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표 3-4> 최근 5년간 육성·지원 예산 현황(단위: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금 액	134.7	161.3	162.0	177.5	175.8

16) 예비전력분야는 전체 국방비의 0.3%, 전력유지비의 1.1%를 차지한다.

5. 예비군부대 근무여건 개선

예비군지휘관은 후방지역의 핵심전력을 운영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을 고려해볼 때 근무여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볼 수 있다. 예비군 부대는 국방예산과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의하여 운영비, 비품, 기타 경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는 예비군 중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중대 운영비, 자원관리 전산망 운영비, 비품교체비 등으로 2006년도 실 소요대비 70%이하 수준으로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비군지휘관은 현재의 복지혜택이 주로 현역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되어 왔기에, 내세울만한 제도적 발전이 제한되었다. 예비군지휘관은 예비전력의 핵심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일직급과 승급제도가 없어 1개 직위에서 10여년 동안 교체없이 근무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복무의욕이나 동기부여가 크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1) 예비군부대 운영여건 개선

예비군 중대는 군을 대표하는 대민창구로써 지역사회에서 중대장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활동비와 교관임무수행을 위한 교통비 등을 반영하여 '08~'10년까지 현재의 운영비 대비 50%를 인상하고, 2020년까지 현역부대와 동일 수준에 이르도록 연차적으로 증액을 추진하며, 인터넷전화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FAX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의 보급 및 자동화 사무기기의 성능을 고려 3년 단위 교체보급과 국방전산망을 이용한 병역 및 군 관련 대민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전화망과의 통합을 추진한다. 예비군 중대의 국방동원정보화 프로그램은 나라사랑카드와 연동되도록

보완을 하며, 동원 전산망 PC를 리스보급하며, 자동경보전파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 환경도 개선하여야 한다.

2) 예비군지휘관 복지여건 개선

향후 편성 / 운용되는 향방대대의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활용하고, 사무용품은 국방예산으로 초도보급을 실시하고 '12년부터 향방대대 편성 및 조직정비에 따라 각 제대별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반영하며 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사보좌역을 담당하여 통합방위작전과 예비군육성에 대한 협조 기능과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서지역과 격오지의 예비군지휘관 숙소는 모두 지원하고, 격오지 수당과 선박료를 현실화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예비군 지휘관의 피복비를 '13년 이후 현역간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국내여행을 지원하고 향방소대장의 군복지시설 사용시 준회원자격을 부여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여 근무여건과 복지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예비역간부 복무제도 등을 도입하여 예비전력을 전담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한 숙소지원, 각종 수당지원등으로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IV. 신뢰받는 예비군훈련 정착

1. 현상 분석

예비군훈련은 연차별 차등제로 훈련체계가 복잡하고 임무와 다른 훈련을 할 때가 많다. 개인별로는 시간이수제 개념에 따라 양(量)위주 훈

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실전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 예비군들의 자율적인 훈련동참과 성과달성을 위해 시가지 전투훈련간 서바이벌 장비 등 과학화장비를 활용한 훈련방법을 전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게임용 장비활용으로 실전감 및 군사적 활용이 제한되고 다양한 전장환경 체험이 미흡한 실정이다. 야외훈련간 실전적 전투상황을 유도하여 개인 및 부대가 상황조치를 할 수 있는 과학화된 훈련장비와 측정식 합격제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예비군 편익보장 차원에서 예비군훈련 자율선택제 및 전국단위 자율입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편 비용과 행정소요가 과도한 실정이다. 예비군훈련 보상비(중식비) 1인당 3,500원과 훈련 교통비 1,800원을 지급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시민의 요구수준에 못 미쳐,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의 불편과 불이익에 대한 불만요인이 빈발하고 있다.

휴일 예비군훈련은 직업적인 특성으로 평일위주 훈련시 훈련참석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자영업자, 직장인, 대학생 등이 평일에는 생업 및 학업을 보장받고, 휴일에 가용시간을 활용하여 예비군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로 '05~'06년도에 시험을 거쳐 '07년에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향토사단별 1~3개소)하여 예비군의 생업보장, 고발자 감소, 자발적인 훈련참여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예비군훈련 3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임군부대로 식당신축 및 부대급식 확대, 지차체와 협조하 도로포장/버스노선연장(조정) 훈련장내 식당 신축, 수세식화장실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비군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예비군훈련장은 동원훈련장과 일반훈련(향방기본훈련, 동미참훈련)을 위한 종합훈련장으로 구분되며, 동원훈련장은 향토 및 동원사단별 1~2개소를, 종합훈련장은 시·군·구 단위로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

다. 향토사단 대대는 소수의 병력으로 훈련장 보수 및 관리유지와 예비군 훈련준비에 제한을 받고, 훈련장이 분산운영 됨에 따라 예산의 집중투자가 곤란한 실정이다.

동원훈련장내 시설은 통합막사, 안보교육관, 식당 등으로 소요대비 62%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훈련장의 각종시설은 소요대비 80%를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시설 중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매년 10% 수준으로 노후화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원훈련장 막사는 70년대 건축하여 노후화가 심해 전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천 및 악기상시 활용하는 안보교육관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 따라서, 부족소요 및 노후 교체소요에 대한 해소대책이 조속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도시화 현상으로 신도시지역은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예비군자원이 급증하여, 일부 부대는 예비군 훈련소요가 과증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종합훈련장 부지(11.5만㎡) 및 시설로는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2. 미래형 예비군훈련 방안¹⁷⁾

예비군훈련은 동원지정을 기준으로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구분하고, 연차별 차등제 훈련으로 훈련체계가 복잡하고 임무에 부합된 훈련실시가 제한되며, <표 4-1>과 같이 5~6년차 동원지정자의 경우에는, 동원훈련을 하지 않고 향방기본훈련 및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시임무와 평시 훈련이 일치되지 않는다. 또한 시간 이수제 개념에 따라 양(量)위주 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실전적 훈련을 실시할 수 있

17) 미래형 예비군훈련은 교과목형과 모의장비형으로 구분하고, 교과목형은 CD / 전산망을 이용하여 강의하거나 자율학습을 하고, 모의장비형은 실장비교육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 사격, 정비, 운전 등을 모의하는 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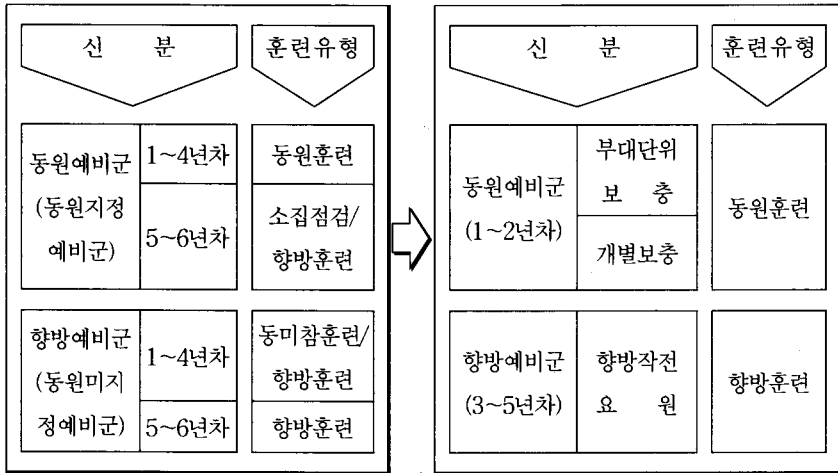
는 여건이 미흡하며, 훈련 보상금과 같은 예비군훈련에 대한 동기유발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4-1> 예비군 훈련체계

구 분	동원예비군 (동원지정자)	향방예비군 (동원미지정자)
운 용	• 증·창설 요원	• 향토방위작전 요원
훈 련	1~4년차	• 동원훈련(2박 3일) • 동미참훈련(3일, 24H) • 향방작계훈련(2일, 12H)
	5~6년차	• 소집점검(4H) • 향방기본훈련(8H) • 향방작계훈련(6H) • 향방기본훈련(8H) • 향방작계훈련(12H)
	7~8년차	훈 련 면 제

1) 예비군 복무와 연계된 훈련체계 정립

예비군 복무체계 발전과 연계하여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구분, <그림 4-1>과 같이 신분별 훈련체계 및 훈련유형을 단순화 한다. 이와 같이 복무체계 및 동원지정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훈련체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예비군 편성·관리·훈련이 일치되어 임무에 부합된 훈련이 가능하다.



<그림 4-1> 예비군 복무체계와 연계된 예비군 훈련체계

2) 예비군 훈련방법의 과학화

서바이벌 장비는 '04년부터 시험 적용후 장비종류, 훈련유형, 대상부대 등을 결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실전적 훈련여건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다. 장기적으로, 향방훈련시 CBT(Computer Based Training) 체계를 활용한 주특기훈련을 하고, 측정식 합격제훈련에 대한 선행 자습교육과 예비군에 대한 제한적 Cyber교육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한다.

더욱 실전적이고 과학화훈련 방법인 사이버사격장(EST2000)을 구축하는 등 과학화된 예비군훈련 여건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Cyber교육, 사이버사격 방법 적용은 개발 및 체계구축 예산소요를 고려하여 현역 훈련체계 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3) 예비군훈련 인센티브(Incentive)제 발전

예비군 훈련입소시 일방적 '통지입소제도'에서 '확인(선택) 자율입소 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비군중대에서 1개월전에 인터넷에 훈련일정을 공시하면, 예비군은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훈련 희망일을 선택하여 입소하는 자율소집제도를 시행한다. 2007년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한 『인터넷 훈련소집제도』를 동미참훈련과 향방기본훈련시에 전부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율입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측정식합격제 훈련은 예비군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Cyber 교육으로 사전에 자가교육 후에 훈련센터에 입소해서 측정식 훈련을 실시하여, 합격자는 훈련을 종료후 영화관람 및 휴식을 보장하고 불합격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로 발전시키고, 훈련참석 및 측정결과는 개인별 훈련카드를 이용하여 훈련현장에서 실시간 처리하여 관리한다.

예비군훈련시 지급하는 중식비 및 교통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급하도록 예비전력 예산에 반영한다. 2013년 이후 현실화를 목표로 현역의 보수체계 및 예비군의 전시보수체계와 연계하여 훈련참가에 따른 보수를 형평성 있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예비군훈련 불편해소

인터넷을 이용한 자율입소제도는 기존의 훈련소집 수단인 일반우편 / 등기우편 발송비용 및 상근예비역의 인력절감(40~50%) 효과가 있었고 특히 범법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훈련제도로, 인터넷에 의한 훈련 신청제도를 의무화하고, 신청률 향상을 위해 Cyber 교육체계를 도입하여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휴일예비군 훈련제도는 예비군의 편익을 도모하고 훈련불참으로 인

한 고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수입군부대별로 1~3개 부대가 분기~반기별로 '휴일훈련의 날'을 선정 시행하고, 휴일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보상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평일 근로시간의 1.5배를 보상토록 하는 사례를 홍보』 하여 사업체별로 시행토록 유도한다.

예비군훈련 3대 불편 해소방안은 '06년도 혁신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서 “훈련을 마친 예비군이 인터넷상의 예비군중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속부대 훈련장을 평가한 결과 『급식, 교통, 편의시설』의 개선을 다수 예비군이(연간 11만명) 요구”하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대 급식부대 확대, 도시락 품평회 및 도시락업체 평가제도 개선, 식약청과 협조하 예비군 급식업체 합동위생점검팀 운용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있다.

하기 동원훈련 입·퇴소간 운행되는 버스계약 체계를 개선하고 승용차 카풀제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훈련장까지 버스노선 연장 / 증차, 네비게이션 및 GPS로 훈련장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편리한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훈련장 편의시설 개선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식당신축, 훈련장 공원화, 훈련장시설을 금연 구역화하는 등 최상의 훈련장 여건개선을 위해 예비전력 예산의 집중투자 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4. 훈련센터 중심의 훈련관리 발전

예비군 종합훈련장은 시·군·구 단위 훈련체제에서 권역별로 통합하여 광역화된 과학화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권역별 예비군훈련센터는 지역주민의 안보교육도장으로 개방하고,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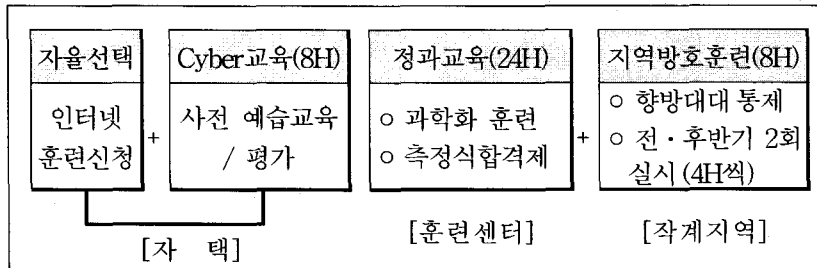
련참관, 영화관람, 체육활동, 병영체험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과 동반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며 현대화 및 과학화된 훈련시설 설치로 훈련성과를 달성시킨다.

설치지역은 책임지역내의 교통이 편리한 시·공간적 중앙지역에 설치되 기본훈련센터는 광역시·도 단위에 설치하고, 보조훈련센터는 기본훈련센터와 장거리 이격 지역에 설치되 부대구조 개편시기, 예비군 접근성, 훈련대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표 4-2>와 같이 훈련센터에는 과학화장비를 포함한 표준시설을 설치한다.

<표 4-2> 훈련센터 표준시설

훈련/통제시설	다용도 시설	편의/복지시설
CBT교장, 전술종합훈련장, 실내사격장, 중앙통제센터 등	시가지전투훈련장, 안보교육관 등	안보공원, 주차장, 식당, 목욕탕, 화장실, 휴게소 등

훈련센터 운용은 <그림 4-2>와 같이 자택에서 예습교육 및 평가(Cyber 교육)후, 인터넷으로 일정을 자율 선택하여 훈련센터에서의 정시훈련과 향방대대 통제의 지역방호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림 4-2> Cyber 교육방법

훈련방법은 예비군이 필요시 평일과 휴무일에 원하는 장소의 훈련센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입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입소거리 및 시간에 따라 지역별·축선별 통합버스를 운영하고 개인별 인터넷을 이용한 훈련일정 자율선택제와 성과위주 합격제 훈련을 원칙으로 하고, 전술훈련은 감정 전투편성하여 Team 단위로 측정식 합격제훈련을 적용한다.

훈련관리는 연대단위 훈련관리 체계로 하여 상근 및 비상근 예비역 간부를 운용하며, 직장인들을 위해 휴일훈련과 전국단위훈련이 가능하도록 관리함으로써 훈련 편익을 증진시킨다.

V.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군은 전시 상비전력의 부대확장과 정규전투임무, 향토방위와 군수지원임무 등을 수행하고, 평시에는 전시대비훈련, 재해재난 대비 구호활동, 평화유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예비전력은 다양한 활동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었으나 국방개혁 2020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상비전력과의 조화 속에서 극대화된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전력이 통합전력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평시로 나뉘어 있는 동원법령과 복잡한 절차의 동원령선포의 일제 정비, 수도권외의 공황 극복과 물자동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송체계의 발전, 효율적인 동원자원관리 및 동원집행을 보장하는 동원센터의 발전 등 제도적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평시 효과적으로 비상대비 자원관리가 가능한 「동원기본법」의

제정, 위기상황에 적절한 동원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동원령선포 절차의 간소화, 전쟁초기의 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전국단위의 수송체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300여만 명의 예비군에 대한 향토사단 중심의 1단계 동원센터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심의 2단계 중앙동원센터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동원 Cell과 연계한 자원조사 및 동원 자원의 통합 관리, 예하 동원보충부대 동원훈련 전담, 전시 동원협조반, 동원 Cell과 연계한 동원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연차를 기준으로 하는 예비군 복무와 훈련체계를 상호 연계하는 예비군 복무체계의 정비, 노후화된 물자와 장비의 정비를 통한 향방작전 지원체계 정립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예비전력 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1~2년차는 동원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동원훈련을, 3~5년차는 향방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향방훈련을 하게하여 예비군의 복무와 훈련을 일치시켜 복무 및 훈련의 형평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국지역에 분산되어 관리가 제한된 훈련장에 대해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향토사단 개편 후에는 광역 행정구역인 『시·군·구』 단위의 향방대대를 편성하고 현역과 동일한 수준의 물자 및 장비를 지급하여 지역예비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예비군부대의 행정지원체계와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복무활성화와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셋째, CBT와 사이버사격장 등 과학적 예비군 훈련방법의 적용과 훈련간 예비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택 자율학습 - 훈련센터 교육 - 작계지역 향방훈련으로 연결되는 연속형 훈련센터 중심으로 훈련관리를 하여야 한다.

훈련면에서는 시간제개념에 의한 양(量)위주 훈련보다 Cyber 교육체

계를 도입하고 권역별 통합 예비군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안보교육도장으로 훈련참관, 병영체험훈련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면서 편익을 증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원제도의 발전, 관리체계의 정비, 신뢰할 수 있는 훈련체계의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예비전력은 미래 국가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 축으로 거듭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공군본부. 2006. 「외국 군구조 편람」, 대전 : 공군본부.
- 곽영진. 200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준비를 위한 국방중기계획 수립”, 「군사세계」 07.8월호, 21세기군사연구소.
- 권현철. 2007. “국방개혁의 국방재원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군사」 제 24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_____. 2004. 「국가자원 동원의 이해」, 서울 : 국방대학교.
- 길병욱. 2007. “국방개혁 : 혁신의 방향과 과제”, 「군사저널」 07.1월호, 군사저널.
- 김강녕. 2007.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우리의 대응”, 「군사저널」 07.5월호, 군사저널.
- 김성규. 2007. “군사력 건설과 군구조개편 분야”, 「한국군사」 제24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국방대학교. 2002.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 국방부. 2006. 「2006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 _____. 2006. 「예비군 실무편람」, 서울 : 국방부.
- _____. 2004. 『국방동원업무규정』, 서울 : 국방부.
- _____. 2004. 『한국군 리더십 진단과 강화방안』, 서울 : 국방부.
- 김대중. 2005. “국방개혁 2020의 재정적 부담능력분석과 효율적 획득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박종범. 2003. “국가동원체제내 수송동원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 논문.
- 박현욱.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향방저널」 07.9월호, 향토방위연구소.
- 비상기획위원회. 2004. 「미육군의 군사동원역사」, 서울 : 전광인쇄정보.
- 비상기획위원회. 2006. 「세계 동원의 역사」, 서울 : 전광인쇄정보.

- 육군본부. 2007. 『2007 육군정책보고서』, 대전 : 육군본부.
- 윤지영. 2002. “예비전력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 전상성. 2005. “국방예산개혁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전 응. 2005.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 : 개념, 쟁점 그리고 정책적 대안”, 「안보학술논집」 제16집 2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정옥임. 2005. “21세기 미래전략을 위한 군비 효율화 방안”, 서울 : 경성문화사.
- 정원영. 2002. 「동원사전」,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_____. 2005. 「예비전력, 미래국방력 건설의 또 하나」,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5. 『예비역간부 상근복무제도 연구』, 서울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_____. 2004. 『전시동원자원의 효율적인 보상체제 확립방안』, 서울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 2006. 「'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행정자치부. 2006. 「참여정부 제도개선」, 서울 : 행정자치부.

A scheme on strengthening of R.O.K. reserved force

Kim, Jae-Sam

Reserved forces of ROKA are in charge of replacement of TOE in the wartime and mission of rear area operation. But there is institutional inertia in the law and organization oriented to fill human resources rather than take mission. We need to prepare for the investment and arrangement of reserved forces as military power that would be replaced standing forces.

In this portion, to reinforce reserve forces elite,

First, efficient mobilization regulations and systems are suggested. I covered a maintenance of relevant mobilization ordinances which need to be legislated and approved by national assembly for wartime and development of mobilization system which might lose the appropriate time for mobilization due to complicated declaration procedures and measures to overcome the panic at the initial stage of the war and organization and employment of nationwide transportation system and mobilization center.

To ensure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with a number of approximately 3 million, there's a necessity of organization for integration and conciliation. To make it real, I suggested establishing and employing the mobilization center, on first phase, employ the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homeland

divisions, on second phase, it is advisable to convert to national level mobilization system and develop to central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During peace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ell, mobilization center can conduct resource survey and integrate and manage mobilization resources and take charge of mobilization training of subordinate units, and during war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oordination team and Cell, can ensure the execution of mobilization.

Second, Future oriented reserve forces management system such as service system of reserve forces and support system of homeland defense operations. Current service and trainings of reserve forces by the year have very low connection, as it is very complex to manage the resources and trainings, and service and training lack the equity, re-establishment of service system is required. Also in an aspect of CSS and cultivation support for reserve forces, a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autonomous organization is obscure, conditions to conduct actual-fighting exercises are limited. Concentrated budgetting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reserve forces training fields are scattered nationwide, and facilities and equipments are rapidly getting older. To improve all these, I suggest the organization of homeland defense battalion with a unit of "City-Gun-District" and supporting the local reserve forces. Conduct unit replacement or personal replacement for those who have finished their 1 or 2 years and homeland defense operation duty for those with 3-5 years for consistency and simplification.

Third, I suggest Future oriented Reserved Training(FRT) and Training Center oriented training management to establish a reliable reserve training. Reserves carry out expansion of unit, conventional combat mission, homeland defense and logistics support during wartime, and actual-fighting exercise, and disaster relief, peace keeping activities. Despite diverse activities and roles, their training condition still stays definitely poor. For these reasons, Modernization of weapons and facilities through gradual replacement and procurement is essential to enhance mobilization support system.

Key Words: Mobilization regulations and systems, Future oriented Reserved Training(FRT), Training Center